2026년도 월 이용료 및 이용자 비용부담

▣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기초 수급권자
1등급	2,512,900	376,935	226,161	150,774	면제
2등급	2,331,200	349,680	209,808	139,872	
3등급	1,528,200	229,230	137,538	91,692	
4등급	1,409,700	211,455	126,873	84,582	
5등급	1,208,900	181,335	108,801	72,534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 시간	금여비용(원)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6%)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20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8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9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2
210분 이상	65,530	9,530	5,898	3,932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8	4,205

▣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50% 가산 적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가산 종류	가산비용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

▣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구 분	급여비용(원)	본인 부담금 (15%)	본인 부담금 (9%)	본인 부담금 (6%)
차량 미이용	50,100	7,515	4,509	3,00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유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초과산정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이용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80%를 산정하며,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함

▣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지 않으며,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